#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87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 : 엄태영 · 이종배 · 김소희

김승수 · 최보윤 · 신동욱

최형두 • 박충권 • 조경태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또는 시위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 인물·대상·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도시 미관 악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천막·현수막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예방 또는 제한하거나 그 내용상 특정 인물·대상·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강도만을 규제할 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규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소음 규제의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금지 행위의 하나로서 특정한 인물·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천막·현수막 등을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현수막 등의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막·현수막 등 설치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 또는 현수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하 "천막·현수막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천막·현수막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자동차등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천막·현수막등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천막·현수막등의 철거 명령을 받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천막·현수막등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특정한 인물·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제2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 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 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 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복성에 관한 기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천막・현수막 등 설치 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 또는 현 수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하 "천막•현수 막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천막・현 수막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자 동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 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 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신 설>

<u>3.</u> (생 략)

<u>우</u> ē	<b>크</b> 가	있으면	도로	.관리	청	또
느	관할	지방/	자치 딘	체의	징	과
협.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	의	주
최 <i>7</i>	사에 게	천막	<ul><li>현수</li></ul>	막등	을	철
거호	할 것을	을 명할	· 수 9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천막・현수막등의 철거 명령을 받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천막・현수막등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특정한 인물·대상이나 집단 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모욕으로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⑤ (생 략)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혀해과 간음)	